



**조 례**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39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시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한다.

제13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기존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3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부서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정책과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47 (대방동 5-1)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작화 기능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32길 79 (본동 16-3)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대방동 503)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9가길 7 (상도동 456)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로14길 20 (사당동 268-6)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5차길 7 (사당동 52-3)	
	동작구 푸드뱅크마켓 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 (사당동 169-8)	저소득층 주민 지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2길 57 (대방동 23 - 193)	중증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청소년과	동작살버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록길49 (본동 8-12)	차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수용보호
	약수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36길 13 (상도동 159-330)	심신허약 노인 및 장애인 주야간보호
	구립재영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67길 26 (노량진동 294-29)	
	사당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수순환로 2081 (사당동 1044-42)	
	흑석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13 (흑석동 335-3)	
	삼화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3길 42 (사당동 1131-13)	
	송학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7길 41 (상도동 210-249)	
	엔젤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7길 9 (사당동 278-34)	
	노들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32길 79 (본동 16-3)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수순환로 2081 (사당동1044-42)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목록 추가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1)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안 제5조, 제6조)
- 2) 위탁기간 변경(5년 이내→5년) 및 위탁취소 사유 변경  
(안 제8조, 제13조)

나. 별표 內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 및 목록 정비  
(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391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예우”를 “예우 및 지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며, “예우를”을 “예우 및 지원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명 및 조항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명, 띄어쓰기, 인용조항·내용을 변경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 2조)

2) 의사상자 지원사업 근거조항인 제15조를 제16조로 변경(안 제4조)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392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활동보조인이라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 전반을”을 “활동지원인력이라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9조제1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각각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4장의 제목을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선정기준”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심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을 “적절하게 지원될”로 한다.

제16조 제목을 “(활동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센터 등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으로 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으로 한다.

제17조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하고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활동지원급여’ 등 용어를 상위 법령 용어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용어 정의를 인용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변경(안 제2조)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관련 용어 일부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5조~제17조)

- 1)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변경
- 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변경
- 3)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변경
- 4)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변경

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선정기준의 근거법·조항 변경(안 제15조)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로 변경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5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39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를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주거복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노인의료복지”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은”을 “구는”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전염성질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35조 중 “누락될”을 “누락된”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를 “(지급의 중지 및 반환)”으로 하고, 제2항 중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권고결정을 이행하고, 노인일자리 관련 별도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을「노인복지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35조)
- 다. ‘경로당’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함(안 제2조)
- 라. 노인일자리 사업 조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되, 안 제18조(경로당의 활용)은 제23조제3항으로 신설(안 제14조부터 안제19조, 제23조)
- 마. 이용자 제한대상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변경함(안 제7조)
- 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시설의 위탁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안 제8조)
- 사.「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노인복지 관계기관 등의 사업 종료 후 결산보고서 등 정산서류 제출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수정(안 제27조)
- 아.「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수당 미반환에 따른 행정상 강제 징수 조항 삭제(안 제36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394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 제28조제2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성장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동작구 환경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용어와 문장을 현행 직제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환경위원회 수행 기능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 심의 추가 (안 제27조)
- 나. 현행 직제에 맞게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개정(안 제28조)
- 다. 환경위원회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29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0조, 제28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395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에너지로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를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장 중 제목 “제3장 녹색성장 추진 체계”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에서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구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3장” 및 “제4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단체등”을 “단체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성장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동작구 환경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용어와 문장을 관련 법령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 ~ 제13조)
- 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심의를 환경위원회에서 수행(안 제10조)
- 다. 정확한 용어 정의를 위해 관련 상위법 근거조항 수정(안 제2조)
-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22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396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 제4호”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같은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8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11조 중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수정 등 조례정비를 통해 교통소통대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로법시행령」전부개정(2014.7.14.)에 따라 제28조제1항 별표1 제4호를 별표 2 제4호나목으로 변경 (안 제1조)

나. 「도로법」전부개정(2014.1.14.)에 따라 제11조 및 제15조를 제14조 및 제18조로 변경 (안 제2조)

다. 「도로법」전부개정(2014.1.14.)에 따라 제99조제2호를 제117조제2항으로 변경 (안 제11조)

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7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1. 개 정 이 유

결핵 관련 발급 증명서와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유료접종 관련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진료 수수료 항목 정비 (안 제2조 별표)
  - 결핵 관련 발급 증명서 정비(결핵진단서 삭제, 결핵확인서 신설)
  - 유료접종 관련 일본뇌염, 장티푸스 중 경구용 1회분, 인플루엔자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보건기획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기획과(전화 : 820-1439, FAX : 820-9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서	가. <삭제> 나. 삭제<2009.12.30> 다. 일반진단서	1 통	5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 액으로 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1 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액	
	아. 사망진단서	1 통	500원	
	자. <삭제> 차. <삭제>			
	카. 그 밖의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 통	500원	
	타.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 통	300원	
	파. 1통초과 발급	1 통	100원	
	하. 결핵확인서	1 통	1,500원	
2. 항결핵제 보급	· 초치료 처방	1인 1개월분	2,000원	
	· 재치료 처방	1인 1개월분	2,000원	
3. 유료접종	가. <삭제>	1ml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간염	1ml		
	다. 장티푸스	<삭제> 주사 용 1회 분 0.5ml		
	라. 유행성 출혈열	0.5ml		
	마. <삭제>	0.5ml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4. 검 사	가. B형간염 검사	1회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액(보건소진료수가중 의과 1회 방문당 총진료비)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마. 콜밀도 검사	1회	4,500원	
	바. 효소면역 검사			
	• AFP	1회	4,100원	
	• CEA	1회	5,700원	
	• PSA	1회	6,500원	
	• CA19-9	1회	6,700원	
• CA15-3	1회	6,400원		
• CA125	1회	6,400원		
• <삭제>				
• 갑상선기능검사	1회	10,000원		
• A형간염 검사	1회	15,000원		
• C형간염 검사	1회	7,000원		
• 풍진 면역 검사	1회	13,000원		
사. 일반종합검진	1회	5,000원		
5. 방사선 사진	방사선(X선) 사진 사본 발급	1매	3,000원	
6. 진료	치아홈메우기치료	1개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액(보건소 진료수가중 치과 1회 방문당 총진료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구 분	종 목	단위	금액	구 분	종 목	단위	금액
1.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자. (생 략) 차 결핵진단서 카.~파. (생 략)	1통	300원	1.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자. (생 략) 차. <삭 제> 카.~파. (생 략) 하. 결핵확인서 <신 설>	1통	1,500원
2.(생 략)				2.(생 략)			
3. 유료접종	가. 일본뇌염 나. (생 략) 다. 장티푸스  라. (생 략) 마. 인플루엔자	1ml (생 략) 경구용 1회분, 주사용1회분0.5 ml  0.5ml	(생 략)	3. 유료접종	가. <삭 제> 나. (생 략) 다. 장티푸스  라. (생 략) 마. <삭 제>	(생 략) (생 략) <삭 제> (생 략)	(생 략)
4.~6. (생 략)				4.~6. (생 략)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747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 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나.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3호)  
다.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 삭제(안 제4조제3호)
- 라. “옥외광고업”을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과 일치(안 10조제2항 등)
- 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
-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수탁 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6항)
- 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제재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아.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 자.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 및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제 정비로 삭제(안 제21조)

차.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참조:도시계획과, 주소 :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전화: 02-820-9199, 팩스: 02-820-9798, E-mail : minjoo@dongjak.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이 조례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

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제3조제1항 본문 중 “광고물”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을 “영 제26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3항”을 “영 제27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우수광고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고, “임명하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임명하며, 간사는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 임기는 영 32조제4항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심의 신청인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차기 심의에서 재검토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제17조”를 “「자격기본법」제1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
  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18조제6항(종전의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그 밖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한다.
-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계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계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 조례 제2조”를 “시 조례 제2조 및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를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구 비서류 란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후면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청구인란 및 인수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으로 하고, 하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으로 하고, 제목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로 하고, 신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하단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옥외광고업종사자”를 “옥외광고사업종사자”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로 하고, 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하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로 하고, 수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하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9만원
- 6㎡ 이상 7㎡ 미만	69만원
- 7㎡ 이상 8㎡ 미만	79만원
- 8㎡ 이상 9㎡ 미만	89만원
- 9㎡ 이상 10㎡ 미만	99만원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9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9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9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9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9만원
라.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9만원
- 6㎡ 이상 7㎡ 미만	69만원
- 7㎡ 이상 8㎡ 미만	79만원
- 8㎡ 이상 9㎡ 미만	89만원
- 9㎡ 이상 10㎡ 미만	99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9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9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9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9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9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 이상 3㎡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9만원
- 3.5㎡ 이상 4㎡ 미만	69만원
- 4㎡ 이상 4.5㎡ 미만	85만원
- 4.5㎡ 이상 5㎡ 미만	99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19만원
- 6㎡ 이상 7㎡ 미만	139만원
- 7㎡ 이상 8㎡ 미만	159만원
- 8㎡ 이상 9㎡ 미만	179만원
- 9㎡ 이상 10㎡ 미만	199만원
라.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0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49만원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59만원
- 7㎡ 이상 8㎡ 미만	69만원
- 8㎡ 이상 9㎡ 미만	79만원
- 9㎡ 이상 10㎡ 미만	89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99만원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119만원
- 14㎡ 이상 16㎡ 미만	139만원
- 16㎡ 이상 18㎡ 미만	159만원
- 18㎡ 이상 20㎡ 미만	179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199만원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219만원
- 30㎡ 이상 35㎡ 미만	239만원

- 35㎡ 이상 40㎡ 미만	249만원
- 40㎡ 이상 45㎡ 미만	269만원
- 45㎡ 이상 50㎡ 미만	289만원
마. 연면적 50㎡ 이상	299만원
	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4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 이상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알기 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4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 이상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p>나. 교통안내소</p>	<p>벽면이용 간판에 준함</p>
<p>다. 안내게시판·자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 승강장·관광안내도</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라.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가. 비행선</p>	
<p>- 연면적 10㎡ 미만</p>	<p>200만원</p>
<p>- 연면적 10㎡ 이상</p>	<p>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p>
	<p>㎡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미만)</p>
<p>나. 그 밖의 교통수단</p>	
<p>(1) 연면적 3㎡ 미만</p>	
<p>- 1㎡ 미만</p>	<p>10만원</p>
<p>- 1㎡ 이상 2㎡ 미만</p>	<p>20만원</p>
<p>- 2㎡ 이상 3㎡ 미만</p>	<p>29만원</p>
<p>(2) 연면적 3㎡ 이상 5㎡ 미만</p>	
<p>- 3㎡ 이상 4㎡ 미만</p>	<p>39만원</p>
<p>- 4㎡ 이상 5㎡ 미만</p>	<p>49만원</p>
<p>(3) 연면적 5㎡ 이상</p>	<p>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p>
	<p>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p>	<p>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p>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등은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별표 2]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사미판,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함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사미판,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 [별표 3]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 가. 일반옥외광고물

광고물등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나.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2.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20,000원
- 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3.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4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2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6.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나.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3. 벽보(50매)	5,000원
14. 전단(1,000매마다)	5,000원
15. 전자계시대(1건)	6,000원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계시대는 제외)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대)	350,000원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 1㎡ 이하	3,000원
- 1㎡ 초과시 1㎡미터당 가산	1,000원
3. 홍보탑광고(개)	20,000원
4. 벽면이용광고	
- 20㎡ 이하	40,000원
- 20㎡ 초과 시 1㎡ 미터당 가산	2,000원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별표 4]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 [별표 5]

##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 [별표 6]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개당 14만원 개당 24만원 개당 34만원

- 1.0㎡ 이상 1.3㎡ 미만	개당 44만원
- 1.3㎡ 이상 1.6㎡ 미만	개당 54만원
- 1.6㎡ 이상 2.0㎡ 미만	개당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개당 85만원
- 2.3㎡ 이상 2.6㎡ 미만	개당 110만원
- 2.6㎡ 이상 3.0㎡ 미만	개당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 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도로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10만원
- 0.5㎡ 이상 0.8㎡ 미만	12만원
- 0.8㎡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29만원
- 1.3㎡ 이상 1.6㎡ 미만	39만원
- 1.6㎡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59만원
- 2.3㎡ 이상 2.6㎡ 미만	69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 1.0㎡ 미만	장당 10만원
- 1.0㎡ 이상 2.0㎡ 미만	장당 12만원
- 2.0㎡ 이상 3.0㎡ 미만	장당 14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미만	장당 24만원
- 3.7㎡ 이상 4.4㎡ 미만	장당 28만원
- 4.4㎡ 이상 5.0㎡ 미만	장당 34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장당 59만원
- 6.0㎡ 이상 8.0㎡ 미만	장당 69만원
- 8.0㎡ 이상 10.0㎡ 미만	장당 79만원
4) 면적 10㎡ 이상	장당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미만		장당 25천원
- 10장 이상 20장 미만		장당 35천원
- 20장 이상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미만		장당 30천원
- 10장 이상 20장 미만		장당 40천원
- 20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미만		장당 18천원
- 10장 이상 20장 미만		장당 27천원
- 20장 이상		장당 3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미만		장당 30천원
- 10장 이상 20장 미만		장당 40천원
- 20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인사발령**

[발령 제141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김은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7.15.~2019.7.14.)	보건기획과	지방보건서기
2	권현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7.15.~2019.12.31.)	신대방제2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시간선택제)

2018. 7. 15.字

[발령 제142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강명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7.16.~2019.2.28.)	행정타운조성과	지방행정주사보
2	이해량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7.16.~2019.7.15.)	신대방제1동	지방행정서기

2018. 7. 16.字

[발령 제143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전재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7.18.~2019.7.17.)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2018. 7. 18.字

[발령 제144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김미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의거 당연퇴직 (임용기간:2013.07.15~2018.07.14)	홍보전산과	일반임기제 지방전산서기

2018. 7. 15. 字

[발령 제145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손정혜	지방별정직 7급상당(비서)에 임함 행정국 행정지원과 근무를 명함	신규	임용

2018. 7. 16.字.

동  
작  
구  
보

제  
1  
5  
5  
4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http://www.dongjak.go.kr)

 동 직 구